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안 제5조2항)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를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 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
<신 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 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 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 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 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 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 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 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 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 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 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u>제6조</u> ~ <u>제10조</u> (생략)	<u>수 있다.</u> <u>제7조</u> ~ <u>제11조</u>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